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통일성을 위하여 우리시 다자녀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우리 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가정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 (현행)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
 - (개정) 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다자녀가정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제2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 합 의: 정책기획과, 감사담당관,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우리시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경상북도 다자녀 지원 정책과의 통일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검토 결과,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다자녀가정”이란,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 개정안 제2조제2호는 다자녀 가정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으로, 다자녀 수혜가구 확대를 통한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 범위와 통일성을 갖추어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및 주택지원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이러한 기조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도 2자녀를 대상으로 한 다자녀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 구미시 또한 본 개정안을 통해 다자녀 수혜가정을 확대하여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혜택을 더욱 많은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다자녀 가정 수혜대상은 2023년 12월 기준으로 기존 22,117가구에서 개정 후 대상자는 27,272가구로 총 5,155가구(23%)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됨.

<관련법령>

□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5. 25.] [경상북도조례 제4827호, 2023. 5. 25., 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 가구”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도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

3. “대출이자”란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별표 (참고자료1)

○ 구미시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지원대상(현행)	지 원 내 용
1	구미과학관 관람료 감면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	관람료 50% 감면
2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이용료 감면		이용료 50% 감면
3	근로자문화센터 이용료 감면		시설 이용료 50% 감면
4	신라불교초전지 이용료 감면		전통가옥 이용료 50% 감면 (1가정 1실에 한함)
5	구미성리학역사관 관람료 감면		관람료 100% 감면
6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감면		이용료 50% 감면
7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사용료 감면		이용료 60% 감면
8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감면		이용료 50% 감면
9	테니스장(금오,구포) 이용료 감면		이용료 50% 감면
10	복합스포츠센터 볼링장 이용료 감면		이용료 50% 감면
11	구미 캠핑장 요금 감면		평상 비수기 평일 50% 감면
12	낙동강 야외물놀이장 입장료 감면		이용료 감면 (7,8월)
1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100% 감면
14	구미에코랜드 이용료 감면		생태탐방 모노레일 60% 감면, 체험활동비 100% 감면
15	옥성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이용료 50% 감면
16	강동문화복지회관 1과목 수강료 면제		1과목 수강료 면제
17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관람료 감면		관람료 100% 감면
18	구미시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감면		기획공연 관람료 40% 감면
19	장난감도서관 이용료 감면	두자녀 이상	연회비 면제
20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감면		연회비 및 사용료 면제
21	평생학습원 1과목 수강료 면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1과목 수강료 면제
22	세자녀가구 상수도요금 지원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수도요금(월 5,100원) 감면
23	다자녀 종량제봉투 지급	다자녀 출생(입양) 신고자	종량제봉투 20L(60매) 지급
24	공용차량 온나눔사업	3자녀 이상 (19세 미만 자녀 1명 이상)	공용차량 무상대여

※ 별표 (참고자료2)

○ 구미시 인구 증감 현황

(기준 : 매년 12.31, 단위 : 명, 세대,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인 구 수	421,494	419,742	416,328	412,581	408,110	405,506
전년대비 증감현황	305 ↓	1,752 ↓	3,414 ↓	3,747 ↓	4,471 ↓	2,604 ↓
증감률	-0.072%	-0.416%	-0.813%	-0.900%	-1.084%	-0.638%
세 대 수	173,269	176,015	179,889	182,645	184,786	187,139
자연증감 (출생자-사망자)	1,687 ↑	1,311 ↑	918 ↑	658 ↑	25 ↓	127 ↓
(출생)	3,415	3,003	2,715	2,427	2,230	1,892
(사망)	1,728	1,692	1,797	1,769	2,255	2,019
사회증감 (전입자-전출자)	2,040 ↓	3,114 ↓	4,424 ↓	4,055 ↓	4,337 ↓	2,503 ↓
(관외전입)	24,647	24,472	26,234	24,833	22,692	22,783
(관외전출)	26,683	27,578	30,654	28,886	27,019	25,286

- ▶ 인구성장률 지속 감소 '18년 $\Delta 0.07\%$ → '22년 $\Delta 1.09\%$
- ▶ '22년 기준 사망자가 출생수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 현상 발생